##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80

발의연월일: 2025. 6. 9.

발 의 자:채현일·서삼석·신정훈

강득구 • 박상혁 • 이병진

박민규 · 이해식 · 서미화

양부남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국회의 회의는 국가기관의 회의에서부터 학급회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의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이를 담는 「국회법」은 회의법의 최정점이자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의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회의회의는 그 자체로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통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 예산안의 심의권, 국정에 대한 감사권 등의 책무를 외부의 압력이나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완수해낼 의무가있습니다.

대표적 장치가 질서유지권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의 핵심 절차인 국회에서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의에서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장의 경고와 퇴장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권이 없는 참석자가 현행법상 미비점을 악용해 질서유지권을 형해화시키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대의기관인 국회의 회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145조부터 제148조까지 및 제148조의2).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 중 "의원이"를 "의장이나 위원장은"으로,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146조 중 "의원은"을 "누구든지"로 한다.

제147조 중 "의원은"을 "누구든지"로 한다.

제148조 중 "의원은"을 "누구든지"로 한다.

제148조의2 중 "의원은"을 "누구든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u>의</u>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u>의</u>
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	장이나 위원장은
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	
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u>어지럽게 하는 사</u>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람에 대하여
있다.	<u>.</u>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	②
니하는 <u>의원에</u> 대해서는 의장	<u>사람에</u>
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	
장시킬 수 있다.	<u>.</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u>의</u>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u>누</u>
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	<u> 구든지</u>
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	
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u>의</u>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u>누</u>
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u> 구든지</u>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	
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
의 반입 금지) <u>의원은</u> 본회의	의 반입 금지) <u>누구든지</u>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	
다.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
석의 점거 금지) <u>의원은</u> 본회	석의 점거 금지) <u>누구든지</u>
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	
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	
니 된다.	